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합121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영열, 육슬기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 21.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위 질권설정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D 주식회사1) (이하 'D'라 한다)는 2006. 9. 8.경 한국산업은행과 산업운영자금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았고, C는 D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한국산업은행은 2017. 5. 18.경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5. 23.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2017. 7. 7. D,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5415), 위 법원은 2017. 7. 13. D,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0,777,802원 및 그중 1,757,788,78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2017. 8. 10. 확정되었다.

나. C의 질권설정행위

C는 2019. 1. 21. E 주식회사2) (이하 'E'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품대금 등 현재 발생한 채무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금액을 501,456,84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C의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하므로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그 취소의 통지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피고와 메모리반도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예금채권 질권설정 방법으로 물품대금채무의 반환을 담보하여 왔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도 기존 담보였던 질권을 갱신한 것으로서 E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여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의사에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에 대하여

C의 2019. 1. 21. 당시 소극재산 중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액만 하더라도 2,160,777,802원³⁾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16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는 2019. 1. 21. 당시 시가 약 269,602,9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501,456,84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5, 7, 8, 21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05. 9. 7. E(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9조에는 E이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부터 E의 대표이사 C는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면서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8. 6. 30. 기준 E의 순이익은 5,300만 원이었는데, 2019. 6. 30. 기준 순이익은 마이너스 16억 600만 원으로 적자전환된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체결 당시 E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C로서는 E의 대표이사로서 E과 피고와의 계속적인 거래계약이 중단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들로부터 피고의 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피고는 그 업체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체결 이후 피고와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로서는 E이 피고로부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의 E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E으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준석, 판사 이강호, 판사 김승현

별지

예금채권의 표시

()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의
예금채권(질권설정액 501,456,840원). 끝.

1) C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2) C가 대표이사인 회사이다.

3)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 기재 금액이고 이에 대하여 2019. 1.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